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새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13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7월 31일
발 의 자 : 이새날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ㆍ석,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ㆍ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6명)

1. 제안이유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 사업의 종류 등 현행 조례로는 규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2조).

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를 반영함(안 제3조제2항).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마. 안전이용기준 마련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바. 그 밖에 조례의 표현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를 “착용하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등을 지켜”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시장은 시민”으로, “수립·시행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의 제목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안전이용기준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이드라인”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의식개선”을 “의식 개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착용하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등을 지켜 ---------- 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 ---------- ---------- ----------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생 략)	제5조(사업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원
4.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 ① ---------- ---------- ----------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제9조(안전교육 등)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의식 개선 ---------- ---------- ② (현행과 같음)